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3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 : 김예지 • 안상훈 • 김도읍

김승수 · 주호영 · 강대식

이인선 • 인요한 • 장동혁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

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경찰청장은 이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	
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이 경우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
	단보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
	<u> 여야 한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